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091호

「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5일  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건설엔지니어링 대가(BIM 설계대가)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(별표1)

-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(도로, 철도)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용어 개정사항 반영

- 용역,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,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

### 3. 의견제출

「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9.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현행	개정안	의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

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(전화 044-201-3566, 3567)